

발 간 등 록 번 호

57-3690000-100012-10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각집중구

청렴  중구

2025년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운영성과



울산광역시 중구
JUNG-GU, ULSAN METROPOLITAN CITY

목 차

I . 인 사 말	7
II . 제도소개 및 연혁	8
III . 구성 및 운영개요	9
IV . 2025년 운영성과	13
V . 민원 처리결과	13
VI . 우수사례	17
VII . 활동사진	18
 참고자료	 21
i .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
ii . 제도 홍보자료(리플릿)	25

국민권익보호관 제도

I

인 사 말

II

제도소개 및 연혁

III

구성 및 운영개요



김 장 출 보호관

지난 1년간의 구민권익보호관 활동은 고충민원 접수 시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접수된 현장 확인 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서에 의견표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매달 구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본 바 운영 첫해를 맞이한 만큼 효율적인 제도 정착과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구 실정과 민원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기관에서 조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을 담당부서에 표명하였고 다수의 의견이 전체 수용 또는 일부 수용되어 행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민원 해결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행정 협력이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깊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장 준 익 보호관

구민권익보호관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직접 듣고 개선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주민 의식과 지역 문화의 문제임을 느꼈습니다. CCTV 설치와 홍보를 병행하니 점차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문제는 교통 혼잡뿐 아니라 보행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점차 늘어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행정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작은 불편함에도 귀 기울이며,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이 도 윤 보호관

올해 구민권익보호관으로 활동하면서, 도로 정비나 쓰레기 배출시설 등 일상 속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민원을 직접 접하고 현장을 찾아가 확인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작은 불편이라 생각했던 문제들이 주민들에게는 생활의 불편이자 불만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고, 개선 조치를 통해 '생활 속 행정'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며 공공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특히 건축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시환경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은 권익보호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더 활성화되어, 권익보호관이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는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주적 장치입니다. 저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시각으로 행정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구민의 권익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숨 쉬는 열린 행정을 만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구민권익보호관(지방옴부즈만) 제도

-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국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구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우리 구에서는 2021년 4월 한글도시 선포에 따라 ‘옴부즈만’이라는 외래어 대신 ‘구민권익보호관’이라는 독자적인 명칭으로 순화하였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구청과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 및 의견표명 등을 수행함으로써 행정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구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연 혁

- 2021. 2. 25. 중구형 옴부즈만 추진계획 수립
- 2021. 3. 31. 구민권익보호관 명칭 결정
- 2021. 7. 5.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21. 7. 6.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24. 5. 23.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 구의회 가결
- 2024. 7. 1.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 2025. 5. 1. 구민권익보호관 활동 개시

우리 구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고충민원의 지속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구민권익보호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황

- 임 기: 4년 단임(2024. 7. 1.~2028. 6. 30.)
- 구성인원: 3명 ※ 구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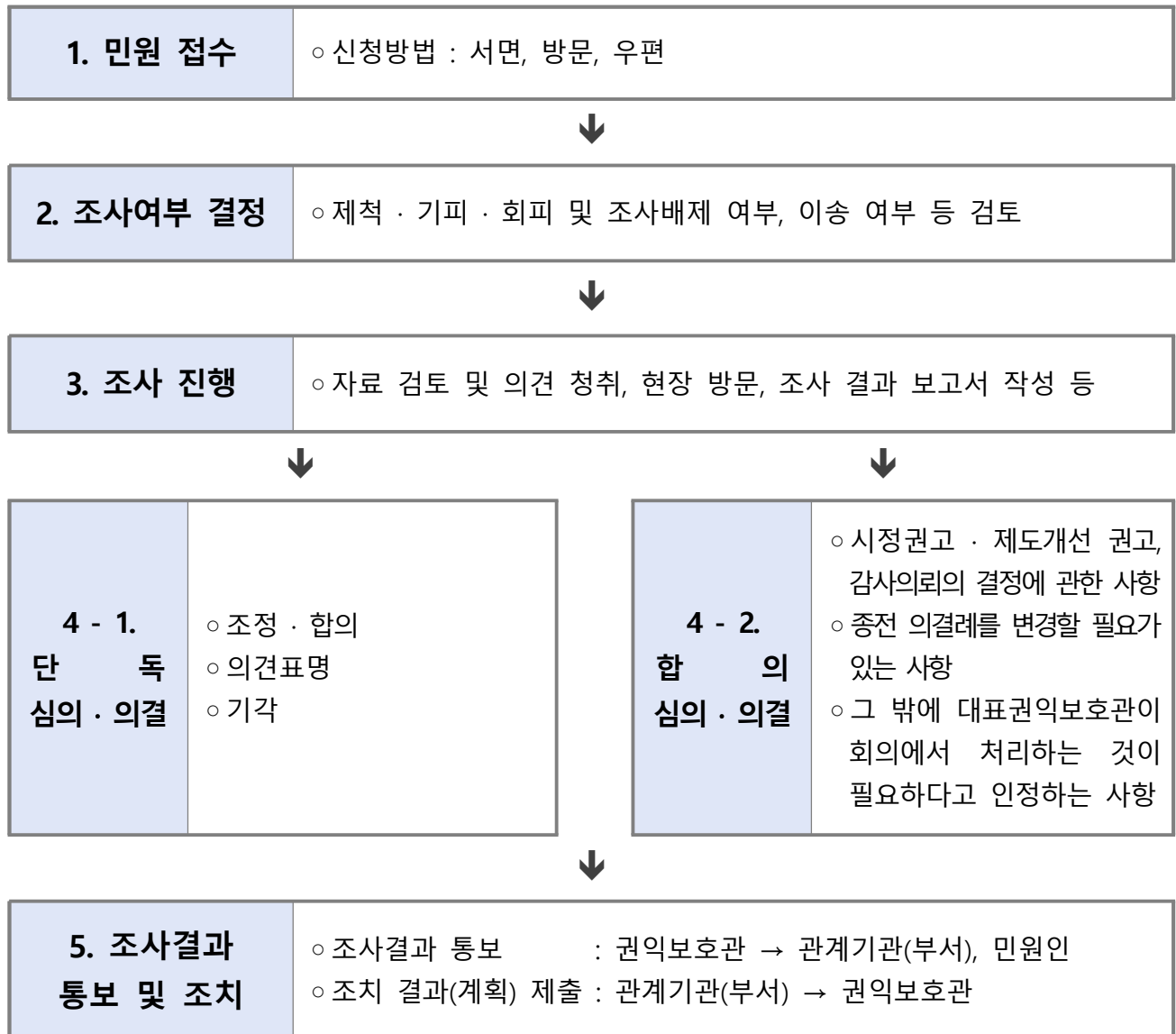
연번	성 명	주 요 경 력
1	김 잠 출	現 울산역사연구소 사무국장
2	장 준 익	前 중구 복지환경국장
3	이 도 윤	現 (주)다담건축사사무소 대표

□ 운영방법

- 일 시: 매주 수요일 14:00~16:00 (2시간) / 개인별 순환근무
- 장 소: 본관 3층 상설감사장
- 근무내용: 고충민원 상담 및 현장방문, 민원 처리 자문 등
- 의사결정: 독립직무수행 원칙, 필요시 합의제(전체 회의)
- 회의운영
 - 정례회: 월 1회(심의안건 없을 시 미개최)
 - 수시회의: 심의 의결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대상 ①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그 밖에 대표권익보호관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처리절차



< 조치(결정) 유형 >

- **시정권고**: 피신청인의 처분 · 부작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 · 변경 · 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시정권고(의견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에 의하여 조정
- **합의**: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하여 처리한 경우
-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의안내**: 민원관련 행정절차 · 제도를 설명 또는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하는 경우
- **이송/각하**: 각하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운영성과 및 처리결과

IV

2025년 운영성과

V

민원 처리결과

VI

우수사례

VII

활동사진

IV 2025년 운영성과

□ 민원 처리현황

○ 분야별 접수 결과

(단위: 건)

합 계	행정·환경	도로·교통	건설·안전	비 고
13 (100%)	7 (55%)	4 (30%)	2 (15%)	

○ 조치 유형별 결과

(단위: 건)

합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 각	비 고
13 (100%)	-	12 (92%)	1 (8%)	

○ 부서 처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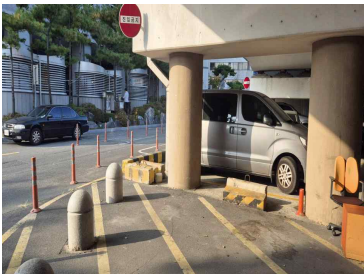
(단위: 건)

합 계	수 용	일부수용	불 수 용	기 각	비 고
12 (100%)	7 (58%)	4 (34%)	-	-	1(처리 중) (8%)

V 민원 처리결과

민원번호	민원요지	주 요 내 용	처 리 결 과	담당부서 (처리결과)	비 고
2025-1호	주택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길 및 부근 주택지역 일반,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 유치원, 학교와 인접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	-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정차 단속 불가, 지속적 주민 계도 및 주기적 밤샘 단속 실시 - 과속방지턱 1개소 설치 완료 	교 통 과 (일부수용) 건 설 과 (수 용)	

민원번호	민원요지	주 요 내 용	처 리 결 과	담당부서 (처리결과)	비 고
2025-2호	무단경작 처리	○○○○○○ 정문, 담벼락 한켠에 벽돌로 조성한 텃밭에 무단경작	자진철거 계고장 부착 및 농작물, 화분 정비 완료 	건 설 과 (수 용)	
2025-3호	장기간 빈집처리	- 장기 방치된 빈집 정비 - 구유지 건축물 철거 검토	- 등기부등본상 해당 집이 사유지고 소유자가 다수로 확인되어 개입 불가 - 철거 예산 편성하여 우선 철거 검토	건 축 과 (기 각) 회 계 과 (수 용)	동일 건 2회 접수
2025-4호	우정동 재개발 현장 인근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 우정동 재개발 현장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 시공사의 지속적인 관리	- 환경정비 완료, 현수막 부착, 주민 계도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이 아닌 공사현장 인근 무단투기 폐기물은 시공사의 법적 처리 의무가 없으나 1회에 한하여 수거 처리 완료, 추후 지속 관리 어려움 	환경미화과 (수 용) 건 설 과 (불 수 용)	
2025-5호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	서동 ○○○○ 일원 도로변 무성한 잡초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지속적 쓰레기 무단투기 유발으로 인한 위생 악화 장기 방치 차량 및 불법주정차로 도로 통행 시 안전사고 우려	- 해당 도로는 미 개통 도로로 인근 주민들의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 전면 통제 및 단속 시 주민 혼란 야기 - 도로변 방치 쓰레기 및 폐가구 수거 완료 	교 통 과 (불 수 용) 환경미화과 (수 용)	

민원번호	민원요지	주 요 내 용	처 리 결 과	담당부서 (처리결과)	비 고
2025-5호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	서동 ○○○-○ 일원 도로변 무성한 잡초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지속적 쓰레기 무단투기 유발으로 인한 위생 악화 장기 방치 차량 및 불법주정차로 도로 통행 시 안전사고 우려	- 잡초 제거 완료  4주간(주 1회) 체납차량 영치 및 번호판 미반환 방치차량 공매처분 완료	건 설 과 (수 용) 세 무 2 과 (수 용)	
2025-6호	장기간 빈집처리	장기 방치된 빈집 정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한국 자산관리공사이므로 개입 불가	건 축 과 (기 각)	구민권의 보호관 결정
2025-7호	다운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다운시장(1일 6일) 발생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충돌 사고 우려 및 차량통행 방해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해 수시 단속 및 골목진입로 주차금지봉 설치 완료 	교 통 과 (수 용)	
2025-8호	중앙동 재개발 구역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중앙동 재개발구역 쓰레기 무단투기로 악취 및 해충 발생	- 환경정비 완료  - 조합 주체 구역 내 순찰 강화 현재 공사 진행 중	환경미화과 (수 용) 도 시 과 (수 용)	
2025-9호	번영교지하차도 쓰레기통 철거	번영교지하차도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진입로에 방치된 대형 쓰레기통 및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심각한 무단투기 발생	철거 및 환경정비 완료 	환경미화과 (수 용)	

민원번호	민원요지	주 요 내 용	처 리 결 과	담당부서 (처리결과)	비 고
2025-10호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옆 갓길 대형차량 주차 단속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이 도로 갓길에 주차하여 접촉사고 발생 위험	- 밤샘 주차 단속 실시 및 불법주정차 방지 현수막 설치 -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는 우선순위 검토 후 추후 예산 확보하여 설치 	교 통 과 (일부수용)	
2025-11호	다전생태공원 펫티켓 미준수	다전생태공원을 방문하는 일부 주민들이 반려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펫티켓 미준수 사례 빈번히 발생	'개 행복하데이' 등 펫티켓 교육 실시 완료 및 2026년 중 주민 교육 예정 - 투기 유발 구덩이 복토 완료 	경제정책과 (수 용) 공원녹지과 (수 용)	
2025-12호	○○○○○○○○ 인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우정동 공동주택 옆 담장 상습 무단투기 발생	- 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 설치 - 무단투기 cctv 설치  	환경미화과 (수 용) 우 정 동 (수 용)	
2025-13호	마을버스 정류장 신설(중구02)	노인이 많이 사는 마을이고 정류장 간 거리가 멀어 마을버스 정류장 신설 요청	시 버스택시과에 신설 요청 공문 발송하였으며 추후 시 검토 결과 통보 대기 중	교 통 과 (처 리 중)	

① 번영교지하차도 쓰레기통 철거

- 민원내용: 2년여 전부터 번영교지하차도에 무단 적치된 쓰레기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단투기가 심각함
- 의견표명: 무단적치 쓰레기통 철거요청
- 처리결과: 수용



- 기대효과: 무단투기 유발 차단, 악취·위생 문제 감소 및 도시미관 개선

② 다전생태공원 반려동물 배변 무단투기 구덩이 복토

- 민원내용: 다전생태공원 이용객 중 일부가 반려동물 배변을 공원 화장실 옆 구덩이 등에 무단투기하는 등 팻티켓을 준수하지 않음
- 의견표명: 팻티켓 교육 및 구덩이 복토 요청
- 처리결과: 수용



- 기대효과: 주민 팻티켓 의식 함양, 무단투기 유발 차단 및 보행환경 개선



참 고 자 료

i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ii

제도 홍보자료(리플릿)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1.07.05 조례 제1098호
(일부개정) 2022.08.01 조례 제118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은 이 조례에 따라 구민권익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구민권익보호관(이하 “권익보호관”)”은 구 또는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권익보호관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기능)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2. 권익보호관이 직접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권익보호관에게 의뢰하는 사안 조사·처리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6. 구청장 및 구의회에 권익보호관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7. 직권조사 시 구청장 및 구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8. 권익보호관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9. 권익보호관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0. 그 밖에 권익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조사·처리

제4조(권익보호관의 구성)

- ① 권익보호관은 구청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 ② 권익보호관은 대표권익보호관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권익보호관은 호선(互選)한다.
- ③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구의회 동의 거처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권익보호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 ① 권익보호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② 권익보호관이 궐위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권익보호관을 위촉해야 한다.
- ③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1. 심신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

제6조(제척)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除斥)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구민권익보호관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7조(회의)

- ① 권익보호관은 직무범위를 서로 다르게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권익보호관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직무관할) 권익보호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9조(권익보호관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권익보호관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제10조(겸직금지) 권익보호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1조(권익보호관 추천위원회)

- ① 구청장은 권익보호관을 선발·추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권익보호관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권익보호관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13조(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변호사 또는 대학교수
 3.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부구청장
 5. 행정지원국장 <개정 2022.8.1.>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임기) 위원회는 권익보호관 추천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위원도 해촉된다.

제15조(제척) 위원이 권익보호관 추천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권익보호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8조(고충민원의 처리) 제3조제1호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할 경우 권익위법을 준용한다.

제19조(운영상황 보고 등)

① 권익보호관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0조(국민권익위와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할 경우 권익보호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로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협의 또는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권익보호관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정책·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권익보호관에 대한 협조·지원

제21조(사무기구)

① 구청장은 권익보호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권익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충민원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운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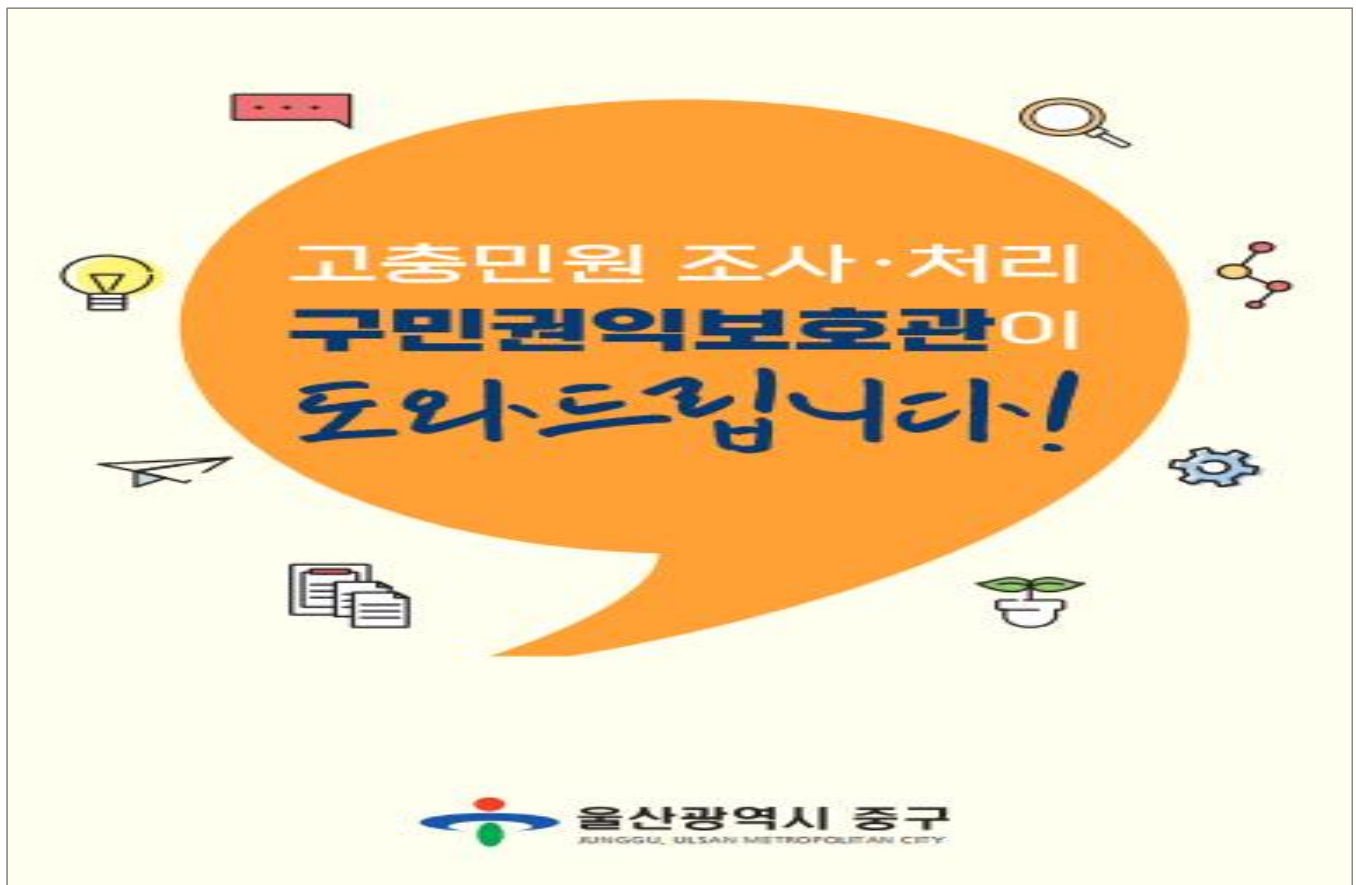
① 구청장은 권익보호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경우 권익보호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권익보호관이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민권익보호관 소개 」

구민권익보호관이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고충민원 조사 및 의견표명 등을 수행하여 행정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구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자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우리 구 '지방음부즈만' 제도입니다.

※ 음부즈만이란?

스웨덴어로 국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구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구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

! 구성현황 !

운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인원 3명

임 기 4년 단임

자격요건 5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

! 하는 일 !

- 신청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와 처리
- 권익보호관이 직접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등

「 고충민원 처리 」

고충민원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구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접수 제외대상 민원

- ☑ 법적 구제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가 진행 중인 사항
-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 ☑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 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등

신청대상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으신 분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받으신 분

처리 절차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44475)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중구청) 3층 기획예산실 청렴감사계

오시는 길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중구청) 3층
기획예산실 청렴감사계
T. 052-290-3110



- 버스
일반 : 127, 214, 216, 527 / 급행 : 5002
- 중구청앞 정류장 하차



“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은
구민의 고충민원을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려 韓 중구